

대전고등법원 2022. 7. 13 선고 2021나1269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# 재판경과

대전고등법원 2022. 7. 13 선고 2021나12696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19가합108675 판결

#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환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7. 13.

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9가합108675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, C, D, E, F은 각 82,000,000원, 피고 G, H, I는 각 75,000,000원, 피고 J는 41,000,000원, 피고 K은 61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. 4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,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‘원고에게’는 ‘AE조합에게’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0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 을 제1호증의 1(사원명부)은 원고의 사원명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원고는 갑 제1호증(인증서) 이외에 달리 원고가 작성한 사원명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(원고는 일부 출자지분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는 사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포함된 사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). 또한 원고는 위 사원명부에 따라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였고,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피고들이 원고의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.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위 사원명부는 원고의 사원명부로 봄이 상당하다.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2~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갑 제1, 5 내지 7호증의 기재, 각 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T과 U는 원고의 출자지분 771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, T은 2012. 12. 20. 자신이 소유한 원고의 출자지분 771주를 각 피고 E, AT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(세종세무서장이 제출한 과세정보회신서 26~28쪽), U는 2012. 12. 20. 자신이 소유한 원고의 출자지분 771주를 피고 F, AU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(고양세무서장이 제출한 과세정보회신서)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과 U는 자신들의 출자지분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, F은 AT, AU보다 앞서 각 T, U로부터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.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행의 ‘6,747.950원을’을 ‘6,747,950원을’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7~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피고 I, K은 자신들의 친족인 AN, AV으로부터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.』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박선준, 판사 이진영, 판사 이선미